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065/02-6955-1004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혼합 재간접형)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24.01.01 - 2024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투자증권(주), 한국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SK증권, DB금융투자, 키움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24.02.20	이익배분 및 분배금 조항 명확화 제39조 (이익분배)	(신설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零'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(-)
2024.03.27	운용/판매 보수 조정 제36조(투자신탁보수)	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최초설정일부터 2030.12.31 일까지 가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2.75 나. 지정참가회사 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05 2. 2031.1.1 일 부터 2040.12.31 일까지 가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2.25 나. 지정참가회사 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05 3. 2041.1.1 일부터 본 투자신탁 해지시까지 가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1.75 나. 지정참가회사 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05	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최초설정일부터 2030.12.31 일까지 가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2.79 나. 지정참가회사 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01 2. 2031.1.1 일부터 2040.12.31 일까지 가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2.29 나. 지정참가회사 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01 3. 2041.1.1 일부터 본 투자신탁 해지시까지 가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1.79 나. 지정참가회사 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01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**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

- 해당사항 없음

**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**

- 해당사항 없음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**

- 해당사항 없음

**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**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대주회계법인	1년	99만원	서면					

**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**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
 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·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
  - 일치함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 - 해당사항 없음

**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**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